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1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남근 · 김문수 · 민병덕
이훈기 · 박선원 · 이주희
박정현 · 이강일 · 남인순
김우영 · 김 윤 · 김현정
진성준 · 최혁진 · 염태영
백승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3배 이하의 범위에서”를 “3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u>3배 이하의 범위에서</u>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u>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고려하여야</u> 한다.</p> <p>1. ~ 7. (생략)</p>	<p>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 ----- -----<u>3배의</u>----- ----- ----- ----- ----- ----- -----</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u>고려하</u>----- -----<u>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u>-----</p> <p>1. ~ 7. (현행과 같음)</p>